

# 2022년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4. 6.(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성호(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3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8건(안전번호 제2022-17012호~1714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17012호~17021호(순번 1번~1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 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2-3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2쪽 내지 9쪽의 카테고리명, 게시물명, 제작사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노정동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카테고리명, 게시물명,

제작사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 회의 부분인 12쪽~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1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6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0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출판물 '□□ □□□ □□ □□□', '♠♠♠♠ ♠♠ ♠♠♠ ♠♠♠ ♠♠♠♠ ♠♠♠♠ ♠♠♠♠' 등을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3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만화 출판물임. 일본 만화 출판물로, 총 6권을 그림파일 형태의 직접전송 형식으로 제공 중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1번~10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시정권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10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1번~12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5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GENTLEMAN'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은 다음(DAUM) 블로그에서 음악 'GENTLEMAN'을 무료 다운로드 제공 중인 사안임. 전체 분량인 3분 14초를 직접전송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13. 04. 12.에 발매한 국내 댄스 가요로써,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영화 '28주 후 (2007)'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28주 후 (2007)'를 4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00분을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07년에 개봉한 영국, 스페인의 공포, SF 영화이며, 시리즈온, TVING 등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방송 '가십걸(2007)'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7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가십걸(2007)'을 2,02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방송 시즌1 전체 분량인 약 40분씩 총 18편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07. 09. 19. ~ 2008. 05. 19.에 방영한 미국 드라마이며, NETFLIX 등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만화 '주술회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3번은 웹하드에서 만화 '주술회전'을 1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만화 1화부터 179화까지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2018년 연재를 시작한 일본 액션 만화로써, 네이버 시리즈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11번~12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1번~12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7012~17021호(순번 1번~10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17022호~17140호(순번 11번~12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13.

분과위원장 대행 박성호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